

어업 경영 세이프티 넷(safety net) 구축사업의 개요

편 집 실

1. 사업의 개요

- 사업주체와 어협계통 조직 등이 계약에 근거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어업용 연료와 양식용 배합사료의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어업자, 양식업자가 가입하는 세이프티 넷을 구축한다.
- 어업자, 양식업자는 사업주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세이프티 넷에 가입하고 적립을 한다.

1.1 세이프티 넷의 구축을 위해서 사업주체와 계약할 수 있는 자

- ① 어업협동조합연합회
- ② 도도부현을 구역으로 하는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어업협동조합
- ③ 어업자를 직접. 간접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 단체(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외한다)
- ④ 연료 판매업자를 직·간접의 구성원으로 하는 중소기업 단체 등

2. 세이프티 넷에 가입할 수 있는 자

○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자. 양식업자

3. 대상으로 하는 어업용 연료, 양식용 배합사료

- O A중유, 경유, 가솔린 등의 연료중 어업용으로 제공하는 것
- 어분(魚粉) 또는 어유(魚油)를 원료로 하는 배합사료 중 양식업용으로 제공하는 것

4. 세이프티 넷 가입

○ 세이프티 넷에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자, 양식업자는 소속된 어업협동조합 등을 경유하여 사업주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립 계약을 체결

• 해외사례

- 적립계약시 적립기간 3년간, 적립방법, 보전금 지불, 대상기간 등의 기본적 사항 결정
- 어업자, 양식업자는 적립 계약에 근거하여 매년, 수량 등을 신청한다.

4.1 수량 등의 신청(유효기간 1년간)

- 아래의 ①~④를 신청한다.
- ① 당해년도의 연료·배합사료 구입 예정 수량
- ② 적립 단가
- ③ 적립금의 납입과 관련되는 분할 회수
- ④ 적립금의 납입 기한
- 주 1: ②~④는 사업주체가 매년도 제시하는 선택중에서 선택한다.
- 신규가입 신청 및 계약의 체결은 매년도, 보전 대상기간의 개시전에 1회만 실시하고 도중의 계약은 실시 하지 않는다.

5. 적 립

○ 가입자는 적립금을 매년도, 납입기한까지 사업주체에 납입하고 사업주체는 가입자 마다 적립금을 관리 한다

5.1 적립금의 납입방법

- ① 가입자가 사업주체에 직접 납입
- ② 어업협동조합 등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정리하여 사업주체에 납입
- 적립금의 액수는 이하의 계산식에서 얻을 수 있는 금액

적립금액 = 가입자가 선택한 적립 단가 × 가입자가 신청한 보전의 대상이 되는 연료·배합사료의 구입 예정 수량

- ※ 적립 단가의 상한은 국가가 제시
 - 우선, 어업용 연료 7,500엔/kl, 양식용 배합사료 5,300엔/t을 상한으로 한다.

6. 보전의 유무 판정

○ 사업주체는 4분기마다 보전의 실시 유무를 판정한다. 보전하게 된 경우는 어업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가입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.

♣ 보전의 기준

▶ 어 업 용 연 료 : 해당 4분기의 평균 원유가격이 직전 7년간의 원유가격 가운데, 고가

1년분과 저가 1년분을 제외한 5년분의 평균 원유가격을 초과한 경우

(2014년도까지 어업용 연료 긴급특별대책 실시중)

▶ 양식용 배합사료 : 해당 4분기의 평균 배합사료 가격이 직전 7년간의 배합사료 가격

가운데, 고가 1년분과 저가 1년분을 제외한 5년분의 평균 배합사료

가격을 초과한 경우

7. 구입 수량의 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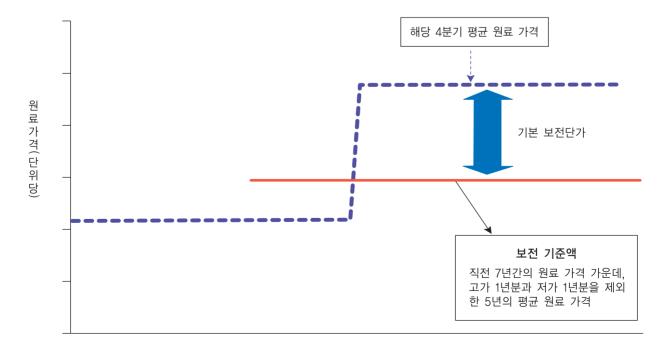
○ 가입자는 보전의 대상이 된 4분기의 어업용 연료, 양식용 배합사료의 구입 수량을 납품서를 첨부해 어업협동조합 등을 경유, 기한내에 사업주체에 보고한다.

8. 보전금의 지불

○ 사업주체는 수산청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해진 보전단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전금을 지불한다.

보전금액 = 보전단가 × 가입자로부터 보고된 해당 4분기의 구입 수량

- ※ 보전단가는 해당 4분기의 평균 원유가격(배합사료의 경우는 평균 배합사료 가격)이 직전 7년간의 원유가격 가운데 고가 1년분과 저가 1년분을 제외한 5년분의 평균 원유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기본으로 한다.
- ※ 해당 4분기의 보전 상한은 해당 4분기 말일에 보전금 적립 잔고의 2배 금액
- ※ 보전 대상인 1년간의 구입수량은 수량 등을 신청한 당해년도의 연료·배합사료 구입 예정 수량의 범위내



9. 적립기간(3년)이 종료되었을 때 처리

- 가입자로부터 신청이 없는 경우 차기 계약(적립기간 3년간)시 자동 연장되고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 잔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이월된다. 가입자는 계속해 다음 년도의 수량 등을 신청하여 적립을 실시한다.
- 가입자가 탈퇴 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 잔액을 반환한다.

10. 기 타

○ 적립 계약의 해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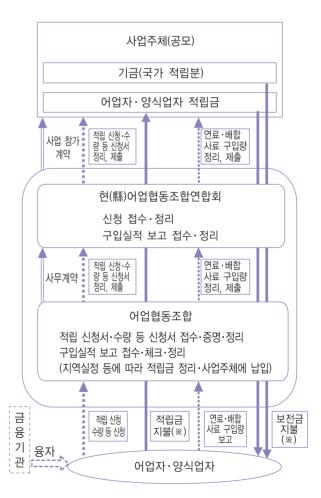
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적립 계약을 도중 해약할 때는 사업주체는 계약에 근거해 해약 수수료를 징수하고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 잔액을 반환한다.

- 구입 수량 등의 변경 신청서에 기재한 구입수량, 적립 단가, 분할 회수 및 납입 기한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.
- 수수료의 징수 사업주체, 사업에 참가하는 어업협동조합, 어업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필요에 따라 가입자로부 터 사업실시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중대한 계약 위반
 적립 계약 및 수량 등의 신청에 관하여 중대한
 위반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보전금의
 일부를 교부하지 않으며, 또는 이미 교부한 보
 전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시킨다.
- 가입을 위한 조치

세이프티 넷의 구축에 참가하는 어업협동조합 연합회, 어업협동조합 등은 지역의 어업자(세이 프티 넷의 구축에 참가하는 자가 어업 종류별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관계 어업 종류 를 영위하는 어업자)가 세이프티 넷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립 신청서의 접수하고 그 외 해당 어업자가 세이프티 넷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 ♣

■ 사업의 구조

• (현縣)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세이프티 넷 구축에 참가하는 경우(현어업협동조합연합회-어업협동조합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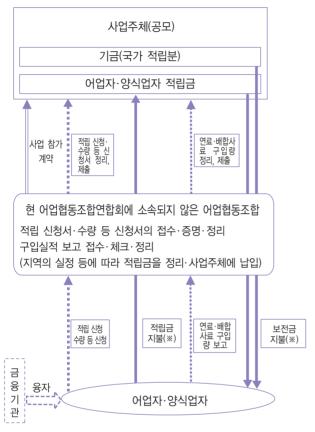


※ 적립금 및 보전금 지불은 지역사정에 따라 어업협동조합 경유 등 탄력적인 운용도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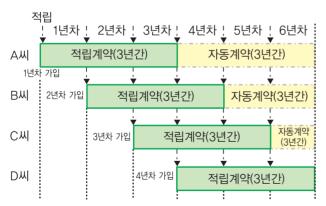


■ 사업의 구조

• (현(縣)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어업협동조합이 세이프티 넷 구축에 참가하는 경우)



※ 적립금 및 보전금 지불은 지역사정에 따라 어업협동조합 경유 등 탄 력적인 운용도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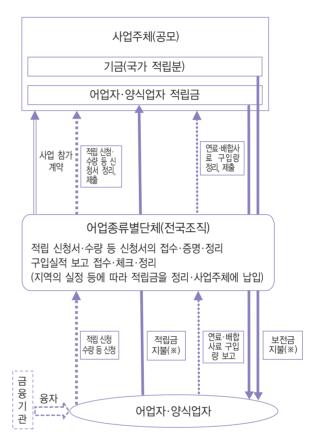


- * 신규가입 신청 및 계약체결은 매년 1회만(3월) 실시한다.
- * 3년간의 적립기간이 종료됐을 때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계속된다.
- * 계약기간 중에는 매년 수량을 신청하고 적립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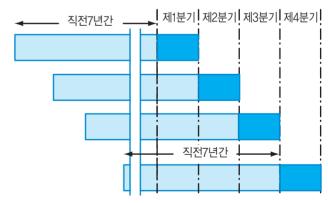
〈그림 1〉 적립계약 체결

■ 사업의 구조

• (어업종류별단체(전국조직)가 세이프티 넷 구축에 참가하는 경우)



※ 적립금 및 보전금 지불은 지역사정에 따라 어업협동조합 경유 등 탄력적인 운용도 가능어업협동조합 경유 등 탄력적인 운용도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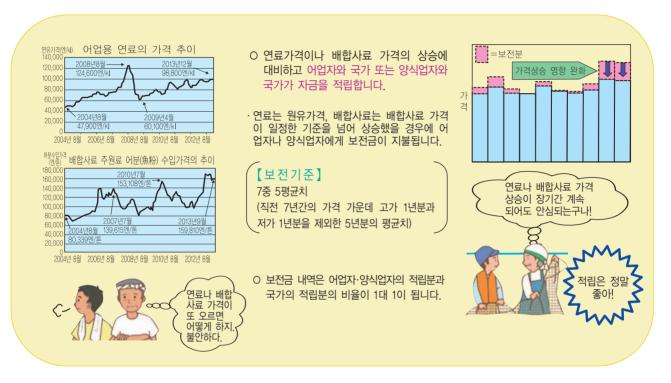
- * 해당 4분기의 평균가격이 직전 7년간의 원료가격 가운데, 고가 1년분과 저 가 1년분을 제외한 5년분의 평균 원료가격을 상회하는 경우에 보전한다.
- * 해당 4분기와 직전 7년간은 모두 3개월씩 어긋나고 있다.

〈그림 2〉 4분기마다 보전의 유무 판정(해당 4분기와 직전 7년간의 관계)

어업용 연료·양식용 배합사료의 가격변동에 대비한 경영 안정 대책 【2012년도 보정예산액 3,910백만엔】

어업경영 세이프티 넷 구축사업 【2012년도 보정예산액 3,910백만엔】 【2013년도 당초예산액 3,500백만엔】

어업자·양식업자와 국가의 거출에 의해 연료가격이나 배합사료 가격 상승시 보전금을 교부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합니다.



〈그림 3〉 어업용 연료·양식용 배합사료의 가격변동에 대비한 경영 안정 대책

